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592

발의연월일: 2024. 9. 3.

발 의 자:김현정・이건태・임오경

이개호 · 김동아 · 맹성규

김기표 · 신정훈 · 박 정

박균택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딥페이크(Deep Fake)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기술로 주목받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·화상 또는 영상 등 정 보 전반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.

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·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

든 거짓의 음향·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,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·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,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, 교육·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제44조의11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4조의11(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·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의 마련)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·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(이하 "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보"라 한다)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1.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보의 유통 실태 파악
  - 2.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피해 실태 파악
  - 3.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보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
  - 4.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
  - 5.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

방을 위한 교육・홍보

6. 그 밖에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4조의11(인공지능 기술을 이
	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
	<u>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로 인</u>
	한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의
	마련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	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람을
	대상으로 하여 인공지능 기술
	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
	•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(이
	하 "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
	정보"라 한다)의 무분별한 유
	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
	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
	추진하여야 한다.
	1.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
	보의 유통 실태 파악
	2.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
	보의 유통으로 인한 명예훼손
	등 피해 실태 파악
	3.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
	보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
	<u>악</u>
	4.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

 보의
 무분별한
 유통
 방지를

 위한
 기술
 개발의
 촉진

- 5.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

   보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

  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・홍보
- 6. 그 밖에 인공지능 기술 이용거짓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사항